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1497(본소), 2014가단2701(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14. 12. 10.

판결 선고2015.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 중 별지1. 도면 표시 9, 41, 42, 4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6㎡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3, 32, 34, 35, 36, 37, 6, 7, 8, 44, 43, 9, 10, 40, 38, 11, 1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77㎡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12㎡와 같은 도면 표시 13, 15, 16, 17, 18, 19,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3㎡를 인도하라.
3. 피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 지상 창고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 지상 주택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 20, 26, 24, 27, 28, 29, 30, 31, 32, 33,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3㎡(1)를

인도하라.

4.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에 관하여
2000. 8.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E 임야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4. 19. 접수 제6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41, 42, 4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6㎡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3, 32, 34, 35,
36, 37, 6, 7, 8, 44, 43, 9, 10, 40, 38, 11, 1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77㎡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3, 15, 16, 17, 18, 19,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3㎡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 지상 창고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5, 20, 26, 24, 27, 28, 29, 30, 31, 32, 33,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3㎡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적공사 의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사용하는 각 대지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가 1994. 4. 29. F에게 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의 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선내 (나)부분 61㎡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선내 (나)부분 61㎡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철거 및 이 부분 토지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61㎡의 소유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1994.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다만, 갑 제5호증의 3,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약 1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약 10평이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61㎡에 해당한다거나(면적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61㎡를 1980. 8. 20.부터 2000. 8. 20.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 8.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건물철거 및 이 부분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은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 선내 (나)부분 61㎡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 8. 20.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

별지